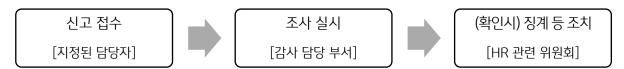


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 및 차별 예방 선언서

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 및 차별 금지

- (성희롱 금지)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됩니다.
- (괴롭힘 금지) 회사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.
- (차별 금지) 임직원의 성별, 인종, 민족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정치적 견해,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.

발생시 조치



[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시 조치 프로세스]

-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라도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으며, 신고 접수시에는 조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합니다.
-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으며,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실시합니다.
- 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 및 차별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
비밀유지

- 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 및 차별 조사 과정에 참여한 임직원은 조사 등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.

재발방지 조치

-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, 괴롭힘 및 차별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게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.

예방교육

-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.